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추진의 역사와 전문과목으로써의 치과보철학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보철학회 연구이사
한국전력공사 부속 한일병원 치과

이재봉

목 차

- I. 서 론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총괄 및 고안
- V. 결 론
- 참고문헌

I. 서 론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보건복지 정책의 하나로 의료인력을 대량 배출하는 Procompetition Policy에 의하여 의과대학, 치과대학이 증설 되면서 의료인력이 과잉 공급으로 되어 의사, 치과의사들의 병원 경영상태는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치과의 경우 한국생산성 본부에 의하면 2005년에는 치과의사 잉여 인력이 3,000명이 넘는다는 보고를 하고 있으며, 97년도 의사면허시험 응시자중 해외유학자는 2.5%(83/3456)에 지나지 않으나, 전문의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치과의사의 경우 응시자의 50.5%(476/924)가 해외 유학생(대부분 필리핀)이며, 현재 400여명의 유학생이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해외 치과대학 유학생 1,200여명이며 중국에도 유학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의사들은 분업적 전문의 제도를 정착시켰기 때문에 54,000명의 의사, 13만명의 간호사, 17만명의 간호조무사, 6만명의 의료기사등 약 40만명의 의료인력이 함께 어울어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한국적 제도인 한의사 제도로 1만여명의 한의사와 진료 영역이 중복되고, 약사의 조제권이 있어 약 4만명의 약사와도 진료 영역이 중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것 같다.

치과의 경우 의료보험이 약 30%를 차지하고 비보험 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6,000명의 치과의사, 11,000명의 기공사, 1만명의 치과위생사등 약 37,000명이 종사하는 치과계는 심각성이 비교적 덜하였으나, 연간 10%이상 증가하는 개원의들로 인하여 치과계는 그 경영 상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으며, 2000년대에는 약 3,000여명의 치과의사 인력이 잉여 인력이 된다는 보고에서 보듯이 분업화, 전문화를 하지 않고는 치과계는 공멸의 길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40여년간의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역사를 연구하여 전문과목으로서 치과보철학의 당위성을 확립하고, 치과의사들의 전문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며,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적인 노력과, 법적인 면에서의 접근에 도움을 주고자 본 논문을 작성 하였다.

이 연구는 대한치과보철학회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I. 연구 방법

대한민국 헌법, 의료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헌법소원청구서, 답변서, 판결문 등을 검토하여 법률적인 면에서 접근 하였다.

한국현대의학사 등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 발간한 의사들의 전문의 제도 역사를 연구하고 현황과 이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하였으며, 치의신보, 치과월보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치과의사들의 전문의제도 소사를 연구한 후 현재의 의사들과 치과의사들의 위상의 차이, 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실시되지 못하는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전문치의제를 반대하는 대책위원회의 주장을 분석하고, 전문치의제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을 분석 하였으며, 현재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안이 나온 대한치과의사회 임시총회시 대치시안과 건치시안을 열거 하였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치과의사 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검토 되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표명에 따라, 지난 40여년간 변천된 여전문의 시행 반대 이유를 연구하여 전문의 시행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전문치의의 역사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 자료(93.4.6,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의제도 연구위원회), 전문치의제 실시에 대하여(93.11.6,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분과), 치협전문치과의제도 연구위원회(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관한 경과보고서, 1993), 치협전문치과의제도연구위원회(전문치과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보고, 1993), 치협전문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 연구보고서, 치과월보, 기타의 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답변서, 결정문에 대해 고찰 하였다.

- 51. 9.25 법률 제221호 국민의료법 제41조 전문과목 표방허가제 의사들 실시
- 60. 2.14 협회에서 해당 병원에 인턴 교육을 의뢰 (이하 치과월보 72.12.10일자)
- 60. 5.24 제1회 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실시
- 62. 3.20 법률 제1035호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치과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그리고 치주위병과로 공포
- 62. 4. 보건사회부 공고 제925호 의사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 시행요령-보건사회부 의정국 의무과-
- 62. 8. 8 15명으로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모임 개최
- 62.10.23 제1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날, 응시자 전원 불참으로 시험무기연기
- 10. 제13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전문의 제도 조속 실시를 촉구하여 학술위원회에 일임하였다.
- 64.11.26 대통령령 제1989호
- 65. 3.23 법률 제1690호 의료법 제6장
- 7.31 보건사회부령 제16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61호 제3장
- 65. 7.13 학회장회의의 의결로서 보건원장에게 전문의 시험 실시를 요청 하였다.
- 10. 제14회 대의원 총회에서 전문의 제도 실시를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
- 66. 4.20 전문의제도실시를 회의하여 보건연구원장에게 심의 위원을 추천
- 7. 9 전문의 시험에대한 회합
- 10.21 제15회 총회에서 전문의 제도실시를 계속 추진 시킬 것을 촉구
- 67. 1.14 보건연구원장에게 심의위원을 다시 추천
- 5.17 전문의 소위원회를 개최 수련년한과 수련기관의 기준을 내정하고 수련병원을 조사 심의
- 5.23 각 종합병원에 수련병원으로 기초조사를 의뢰
- 7. 7 지도치과의사 자격을 내정
- 7.21 보사부령 제119호로 의사,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규정을 공포

10. 계속 추진시킬 것을 촉구 의결
68. 4.23 전문의자격심의 위원회를 보건연구원에
서 개최하였음.(치과월보 68.4, 1면)
10. 제17회 정기총회 전문의 시험실시를 촉구
69. 1.31 수련병원신청 마감
- 4.15 치과월보 1면에 게재
- 4.20 보건연구원에서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 12개 수련병원 인정과 회의 내용이
치과월보 69.6.25일자 게재
보건원과 행정부에서 위원장직을 만기로
현 법을 개정 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면을 선출하기로 함.
- 6.25 12개 수련병원 인준 (치과월보 28호)-제
4차 전문의 위원회
1. 전문과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2. 지도치과의사의 자격
 - 1) 대학에 있어서는 조교수 이상
 - 2) 군에서는 소령이상
 - 3)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에서는 해당
과목을 7년이상 수련한자
- * 치과전문의 수련병원을 인준 받고자 하
는 병원은 치과의사협회에서 매년 1회
수련병원 인정신청 요령 공고에 의하여
신청토록 한다.
- 제1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사항
1. 응시자격 및 심사 절차
 - 1)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대한치과의
사협회장의 추천에 의거 응시자격
심사위원을(각 학회 3명) 위촉한다.
 - 2) 응시자격의 심사
각학회장은 응시자격심사위원으
로 하여금 응시자가 제출한 임상
수련증명서에 의거 응시자격 유무
를 심사 확인 보고한다.
 - 3) 응시자격
 - 가. 의사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
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인턴및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보건사회부령 제199조 제
3조)
 - 나. 치과의사면허를 받은날로 부터
수련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 국가시험합격증을 교부받은 날
로부터 3개월간은 면허증 신청
기간으로 수련기간으로 인정하
기로 하였다.
- 4) 응시과목
 - 5) 합격기준
 - 6) 출제방법
10. 제18회 정기총회에서 전문의시험실시
를 조속히 실시 할 것을 촉구
- 10.21 보건연구원에서 5차 전문의자격심의위원
회를 개최하고 시험실시일자와 방
법을 의결 (치과월보 10.30)
- 10.23 제1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공
고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3호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공고함
시험일시 69.12.4
-국립보건연구원 고시과에 문의 하기
바람-
11. 8 보건연구원장에 시험을 당분간 연기하여
줄 것을 건의 이유: 응시자격에 있어서
동등자격 규정이 빠져 문호가 좁다는것
과 수련병원 인정이 대학과 군병원에 편
중 되어서 이 역시 응시자격의 문호가
좁아졌다는 건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이
사회에서 인정(치과월보 11. -응시자격두
고 불만 많아-)
- 69.12.26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허용 위원장(국립보
건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심의위원회를 개최
-수련병원 인정기준 완화, 유니케어 3대
이상, 과목당 2대 증설, 자격있는 치과의
사 있어야-(치과월보 70.1.15)
- 70 전문의의 수련 규정 (치과월보 70.1.15)
- 70.10.22 제19차 대의원총회 “만장일치로 전문의제
도 추진을 확인”(치과월보 71.4.10), 치과
수련병원제도 확보의 건
71. 1.25 민간수련병원 실태 조사
71. 4.10 수련병원실태조사 착수-수련의 등록제실
시 (치과월보 71.4.10)
72. 2.17 대통령령 6075호 “전문의를수련규정” 공포

- 제4조 수련기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제5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수련규정은 따로 정한다.
72. 2.17. 공직치과의사회 창설 및 대의원 선출규정등을 내용으로한 정관 규정안 보건사회부 승인 (치협 21차 총회) 치과월보 62호
72. 9.10 실시는 불가피 하나 시기와 실시이후 부작용 대책 강구:서치, 치협 회의
73. 2.16 법률 제2533호
73. 4.10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세칙 (치과월보 4면)
73. 3. 2 전문의 응시자격 완화 건의(치과월보 73.3.10)
보사부령 제405호 규정2조 1항
이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요구
73. 전국 21개 수련병원 수련교육 실태조사 실시(치과월보 66호)
73. 4.13 제22차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1) 국민소득 1,000불 때까지 무기 연기키로
2) 의료보험 제도가 될 때
3) 대다수 회원이 요망 할 때
- 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
76. 4.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규정
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시행규칙제정
80. 3.29 제29차 총회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전문의 제도 존폐여부 회신요청” 보고
81. 4.25 제30차 총회(30차) 반대 1표, 찬성 24표
- 81.12.31 법률 제3054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5조에 명시
82. 2.16 보사부로 부터 치과전문의 제도는 현실성이 희박하고 그 세분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니 폐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 공문 접수됨에 따라 동년총회에 상정하여 전문의 제도를 실시키로 결정.
82. 2.26 보사부에서 치과전문의 제도 조속 실시 요청
82. 4.10 제31차 대의원총회 전문의 실시 만장일치결의 시행 집행부에 위임
82. 5.10 전문의자격시험 특별위원회 설치(치의신보 82.5.10)
83. 3.22 치과전문의 시험시행연구위원회
82. 7.23 대통령령(제10874호)에 의해 치과의사전문과목으로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위병과로 규정
83. 2.19 분과학회에 전문의 시험 시행에 관한 의견조회
83. 3.22 치과전문의 시험시행연구위원회 구성, 개최
83. 4. 9 제32차 대의원총회 전문의 시험실시 연구 검토 집행부 위임
84. 1. 보건사회부 고시 제846호 치과 인턴,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보철과 전속 전문의: 1인 이상
연간 환자 진료실적:신환 300인 이상
연인원 2,000인 이상
시설기구:기공실, 도재실, 평행측정기, 진공도재소성로, 소환로, 치과용 서버이어, 교합기, 유압식 가압기, 온성기, 모형트리머,진공혼합기, 기공용엔진 2대이상, 초음파세척기, 분쇄연마기, 반조절성 교합기, 악운동기록기, 완전조절성 교합기
84. 2.23 공청회 연차회의 토의사항
1. 실시과목 선정의 건
1) 개원가에서 요구하는 과목은 구강외과와 교정과를 먼저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점차 과목 확대하길 바람.
2) 구강외과와 교정과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5개 과목은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3) 구강외과와 교정과를 시행하면 나머지 치과의 수련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4) 전문치의제 시행에 손실보다 이익이 앞선다면 당연히 시행해야
5) 전문치의제도를 실시 하려면 구강외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2. 시험자격 및 인원제한의 건
1) 소수정 예화해야 한다.

- 2) 처음에는 자격 완화하여 자격자는 모두 참여케 하여야
 - 3) 수련기간을 5년으로 한다.
 - 4) 레지던트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 치과의사에게 교육기관 기타 종합병원 근무에 상응하는 경력 및 교육, 연구실적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다.
 - 5) 표방과목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하여 1과목으로 제한
 - 6) 대학원 수련생에게도 수험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 7) 대통령령에 의한 수련기간 개정과 수련기관 내규를 제정한다.
 - 8) 수련기간이 5년일 경우 전문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군에 입대시 전문의 수험 자격을 부여하는데 제대 2년여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84. 3.15 “치과의사전문 의 과목 및 자격인정에 관한 공청회” 서울치대강당
-전회원 설문조사 계획-
-구강외과부터 우선실시론 대두(치의신보 84. 3.25)
- 1. 이재현 (성바로 치과의원)
 - 1)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가져옴
 - 2) 국민에게 고도의 의료시혜 및 건강 복지향상 도모
 - 3) 의료전달 체계를 위해 필요
 - 4) 의학과 균형발전 도모
 - 5) 치과의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 6) 치과의사의수 증가
 - 7) 해외 치과기술 협력 증진
 - 2. 김종원 (서울치대 교수)
 - 실시 앞서 고려할 사항
 - 1) 개원가의 기존 환자 수습 질서를 변화시키면 곤란
 - 2) 치과의사 지위 향상과 학문발전을 위해 공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실시
 - 3)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과목 선정이 이루어져야
 - 4) 치과의료 영역을 보존, 발전시키는
- 차원에서, 구강외과만의 선실시
- 3. 김종관 (연세치대교수)
 - 교정, 소치, 치주, 구강외과, 보철의 동시시행과 타과의 삼입노력
 - 4. 기창덕
 - 1) 수련병원의 표준화
 - 2) 지도교수의 보충
 - 3) 수련기관의 재검토
 - 4) 전담기구의 신설
84. 4.28 제33차 대의원총회 전문의제도 조기실시 촉구 -집행부 위임
- 84.10.15 치협 “군전공의 수련기관 인정기준” 5개 과중 2개과는 있어야 (치의신보 328)
- 84.12. 8 치협 “군전공의 수련병원 인정 및 기준규정” 2개과 이상 지도치의 재직 전회원에 설문조사
85. 4.27 제34차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결의
85. 5. 4 정관개정심의회:전문 의 연구소위원회
87. 2.18 국방부에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간 연장, 건의하여 우선 구강악안면외과 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과별 세부 조정 계획을 수립한 후 검토를 받아 시행키로 회신 받음
- 87.11.11 보사부(의제 01254-025818호)로 부터 전공의 수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실시 근거만 있는 치과전공의 수련제도의 필요성을 대검토 하여 의견 제출 하라는 요청 공문 접수
88. 2. 8 제10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병원지정 및 수련기준에 관한 규정(안)과 레지던트 각과별 년차 교과과정 결의(10개 과목)
88. 3. 2 보사부에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에 관한 규정(안) 건의
88. 3.25 국방부에 보사부에 건의한 10개 과목 수련기간 연장 건의
88. 9.21 학술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치과의제도 조기실시에 대한 의견일치
- 88.12. 2 국방부로부터 수련기간 연장 및 징집연기에 관한 사항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장을 통하여 요청하고, 10개과에 대한 레지

- 던트 수련기간 3년은 보사부와 수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 하겠음을 통보 받음.
- 88.12.29 전문지인 현대치학 제55호 및 제56호 6면에 별도의 전문치과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게재하여 회원의 여론 수렴.
89. 1.11 제9회 정기이사회에서 전문치과의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89. 1. 21 협회기관지인 치의신보 제522호 제8면에 시행규칙 제정(안)을 최종 공고.
89. 1.21 보사부에 “전문 치과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건의.
89. 2. 1 보사부로부터 동 건의 사항에 대하여 학계(치과대학등 포함) 및 개업의사들도 참여한 공청회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집약된 내용을 제출하여 줄것을 요청 받음.
89. 2.28 보건사회부에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그간 협회에서 추진한 결과를 첨부하여 재건의.
89. 3.16 보사부로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치과의 수련병원명부, 수련병원별 년도별, 전문과목별 이수자현황, 1989년도 수련병원별 인턴, 레지던트 년차별 현황자료를 요청 받음.
89. 5.13 보사부에 동 건의 회신에 따른 자료 제출
89. 8.23 전문치과의시험시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필수로 구강악안면 외과를 포함한 2개과로 하고, 부칙의 경과조치 사항 추가.
89. 9.18 전문치과의 시험시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법상 규정으로 규정된 5개 과목을 우선 시행하고 제외된 5개 과목에 대하여는 전문치과의 제도가 시행되는 데로 추가하는 법개정을 추진기로 결정.
89. 9.20 보사부에 5개 과목에 대하여 전문치과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 건의.
- 89.10.20 보사부로부터 상기 사항에 대하여 법률운용의 체계상 합당한지 여부를 법제처 등과 사전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며, 본 제도 시행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중임을 회신 접수.
- 89.11.24 보사부 요청에 의거 의료정책과장과의 간담회 개최.
- 89.12.30 전문치과의제도 입법예고.
90. 2.10 긴급전국지부장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을 정기 대의원총회까지 유보할 것을 보사부에 요청키로 의결.
90. 4.21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 입법예고 유보 결의
- 전문의 반대 요지(서울)
1. 전문의만 자격있는 치과의사로 인식
 2. 전문의가 근무하는 의원 및 종합병원등에 환자가 집중되어 진료질서 혼란을 야기
 3. 치과의사 항호간 위화감 조성과의료분쟁의 심각성이 발생할 우려
- 총회직속 연구위원회 설치
- 전문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 구성
- 입법예고 유보 1, 2년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창출
90. 6.29 보사부로부터 입법예고 기간이후 5개월이 경과한 점을 감안할 때 계속 지체할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문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위원회의 분석결과를 90. 7. 7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기일내 제출치 않을시는 당초 방침대로 처리하겠다는 공문 접수
90. 7. 7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전문치과제도 심의위원회 구성
- 90 7.30 전문치과의제도 연구 실무위원회 구성, 개최
- 위원장:윤희철
- 간사:장영일
- 위원:강우근, 김영주, 손창인, 최종운, 이충국, 이의웅, 김광남, 유해영
- 90.11.14 보사부로부터 기 입법예고된 전문치과의 제도 정립을 금년내 종결코자 협회의 집약된 최종이건 제출 촉구 공문 접수
- 90.11.30 보사부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에

걸쳐 연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토의를 하고 있으므로 집약된 최종 의견을 제출 할 때까지 기간 연장 요청.

- 91. 3.14 제11회 전문치과의제도 연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상정(안) 의결
제1안: 구강외과만 실시.
제2안: 5개 과목 동시 실시. 단, 전문과목 표방은 2차 진료관에 한함.
제3안: 우선 구강외과만 실시. 단 전체 조건을 붙여 시행 2년후 현재 수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전 과목 실시.
- 91. 4. 6 전문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상기 3개안을 논의한 결과 전문치과의 제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치과계에 필요한 제도임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집약, 실시에 공감을 하면서도 제시된 3개(안)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할 점이 많아 앞으로 1년간 좀 더 연구키로하고 제40차 총회(91. 4.25)에는 정식의안 상정은 일단 유보하고 보고사항으로 처리키로 결의
- 91. 4.20 제40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1년간 더 연구키로한 동심의위원회 결의사항을 받아들임.
전문치과의제도 시행 반대 재촉구 결의(서울).
- 91.12.17-19 보사부 정기감사시 전문의 제도 입법 예고 연구결과 보고 지연 지적당함.
- 92. 1.31 보사부에 상기사항에 대하여 현재 연구중이며, 금번 제41차 총회에 상정 결의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의 답변서 제출
- 92-1-92.4 전문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 총 6회와 연구실무위원회 16회 개최 연구논의
- 92. 3.10 제5회 전문치과의제도 연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상정(안) 의결
제1안: 치의학 전과목에 대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을 반대하며 구강악안면외과(구강외과:의료법 명칭)만을 법적 보완을 하여 실시
제2안: 구강악안면외과를 우선 실시하고 현재 수련기관에서 전공의를 교육

시키고 있는 과목을 순차적으로 실시. 단, 전문과목은 2차진료기관에서만 표방.

- 92. 4.11 전문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구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2개(안)을 수정, 가결.
제1안: 전문치과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우선 구강외과를 시행하고 그외의 과목은 시대적 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연구, 검토하여 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단 전문치과의는 일정수에 한한다.
제2안: 치의학 전 과목에 대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을 반대하며 구강외과만을 법적보완하여 실시한다.
단, 그외의 과목(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은 대통령령에서 일단 삭제하고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에 추가 삽입하여 실시토록 한다.
- 92. 4.25 제41차 총회에서 전문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한 2개(안)을 논의한 결과 과반수 미달로 현 상태로 보류키로 의결.
1차투표: 재석대의원 182명중
제1안 찬성 72표
제2안 찬성 16표
기권 95표
2차투표: 보류 96명
폐지 3명
- 92. 6.20 전국지부장회의에서 총회에서 유보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92년도 사업 계획에 의거 위원회를 구성, 향후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결의
- 92. 6.24 보사부에 총회 부의사항인 전문의제도 연구결과보고 지연독촉 공문에 대하여 제41차 총회에서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1, 2차 투표를 실시한 바, 현 상태와 변동 없이 시행을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회신.
- 92.5.13-7.20 보사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중 치과진료과목 추가개정 건의
- 92. 8.28 의료법 시행규칙 중 치과진료과목 추가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와 기존 진료과목 명칭변경에 대한 입법예고, 개정 (보사부령 제901호/93. 3. 3)

92. 9.28 전문치의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최부병
 간사: 장영일
 위원: 김광남, 김명래, 김종열, 나성식, 장상헌, 최종운, 황광세
- 92.10.28 전문치과의제도 연구위원회 6회개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보고” 검토
93. 4.17 유보상태에 있는 치과전문의제도 시행반대의 건 (서울)
 처리: 동 안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토론없이 표결결과 재석 대의원 242명중 146명 찬성으로 현상태대로 계속 유보하기로 결의
- 93.11. 6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토론회 “전문치의제 실시에 대하여”
 - 의료의 세분화, 전문화라는 측면에 비추어 전문치의제는 실시 되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촉박함)
 - 필요한 제반조치
 · 치과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
 · 전문치의 배출은 적정 범위내에서
 · 학부의교육환경 대폭 개선 강화
 · 의료보험수가체제의 개선이 요구 됨
 - 치의학계 내부의 이해를 둘러싼 찬반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법적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치의학계의 단결과 의지를 모아 나가야 한다.
- 93.12.11 전공의 수련기간 통일 추진 (3년 요청)(치의신보 93.12.11, 750호 5면)
 치협은 각 전공과별, 각 수련기관별로 전공의 수련기간이 달라 국방부에서 이 수련기간의 통일을 요구해 오며 따라 각 수련병원등에 10개과목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을 3년으로 통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94년도 국전공의 선발시부터 구

강의과, 교정과는 3년 과정을, 기타 8개과는 2년 과정으로 통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치협에 밝혀 왔다.

94. 1.20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남일우교수), 대한치과보철학회(김광남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이기수교수) 등 3개학회 명의로 “전문치과의제도의 조기시행” 건의문을 행쇄위에 제출함(서치뉴스 호외 94. 2.23)
94. 1.29 보건사회부 3개분과 학회장에 시행방안 검토회신(의정65530-84)
94. 2.18 치과전문의 제도 실시발표(행쇄위)
94. 2.22 서울시 긴급이사회 소집 “집행부 총사퇴 배수진” 제하의 서치뉴스 호외 발간 3개 학회장 징계요청
94. 2.24 서울시회장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회식, 전문의 반대의견 표시
3. 5 전국시도지부장회의: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한 3개 학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중징계 여부 확정 할 것. 조속한 시일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시대의원 총회를 소집 할 것
94. 3. 7 안박서치회장 3개 분과학회장 징계안 발의
94. 3.14 윤리위원회 3개 분과학회장 징계결의 윤리위원회 개최 개요
1. 협회 제42차 정기대의원총회('93. 4. 17)에서 전문치과의제도 문제는 차기 총회때 까지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상기 3개 학회장 공동 명의로 행정쇄신위원회에 “전문치과의제도의 실천을 위한 건의문”(94. 1.20)을 제출함
 2. 행정쇄신위원회의 전문치과의제도 시행 결정 및 주요 일간신문 및 MBC 12:00 방송보도를 통하여 올해 안에 관련규정 및 규칙상의 미비점을 보완, 내년 상반기에 실시 된다는 기사화(보도)가 됨으로써 치과계의 혼란과 물의를 야기 시킴.
 3. 동 3개 학회의 행정쇄신위원회 건의문 제출행위는 협회 정관 제67조 제

1호의 “본 협회 정관과 의결을 위반한자”의 위배행위에 해당됨.

4. 따라서 긴급 전국지부장회의(94. 3. 5)를 개최 동 사안에 대하여 논의결과 총회의 결의를 위배하여 협회 정관 제67조에 해당됨으로 3개 학회를 증정계토록 징계 요청함에 따라 제 11회 정기이사회(94. 3. 8) 의결에 의거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안을 심의코자함.

94. 3.17 치협이 3개 학회장에 대해 2년간 회원권리 정지 징계 (법제 43,90-595)

94. 3.26 서치총회 전문의 제도 폐기안 가결 59:3

94. 4.23 선행조건 충족 후 실시 결의
전문의제도에 관한 안을 종합하여 전문의 제도에 대한 동의(안) 가결

1. 전문치과의 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이 되어야 한다.

2. 전문치과의 제도가 실시될 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 1) 치과의료의 특수성에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인 치과의사법 제정을 고려한 의료관계 법령의 개정 및 보완이 되어야한다.

가. 전문과목의 조정

나. 전문과목의 표방방법 개선(1차 기관 표방금지)

다. 치과의료 전달체계의 확립 (시설기준)

라. 회원에 대한 중앙회의 감독권 강화(변호사법의 징계권 참조)

- 2) 의보수가 단일화 (단일가로서 의원 경영 채산성 확보를 위한 연구)

3.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직속 기구로서 2항의 선행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연구하고, 당국의 조치에 대한 충족도를 심사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은 의장단과 지부장단이 추천하여 구성한다.

4. 상기사항들이 충족될 때까지 전문치의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전문치의제도 연구 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 임명)

김화규 부회장: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더라도 그린벨트 지역에 집을 지을 수가 없는것 처럼 의료법 제26조에도 중앙회의 정관 준수를 못박은 것과 같이 청원권리는 있으나 총회 의결 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답변.

95. 1.28 대통령령 제14516호 치과 전문과목 10개로 세분화

95. 4. 제44차 총회 구강외과만 실시

재석대의원:203명

찬성:96명

반대:107명(부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전문의 문제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협회장이 약속함.

95. 7.19 행정쇄신위원회 (행쇄위 05090-250) 보건복지부 장관에 치과전문의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촉구

96. 1.10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보건복지부 의정 65530-30호, 96. 1.13 관보 13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중

시행령

제3조 수련기간의 변경

제6조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3조 치과의사 수련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치과전공의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96. 1.19 서치집행부, 25개 구회장중 35명 보건복지부 및 신한국당 방문하여 전문의제 실시 반대, 진정서 전달.

96. 1.23 서치 임시대의원 총회

입법예고 철회 결의문 채택, 협회장 불신 입건

96 1. 김정균 회장 “임시대의원총회에 즈음하여” 유인물 배포

- 입법 예고는 대의원총회에서 제시한 선행조건의 가시적 결과임

- 1차 기관표방 금지는 보건복지부와 합의하였음
 - 의보수가 현실화 17% 인상
 - 행정쇄신위원회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니 부끄러움
96. 2.10 임시대의원 총회 부결 105대 148로 부결 (대한치과의사협회 안)
 김명래대의원(공직):유보되었을시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인정의 실시시, 행정 소송할 경우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겠는가?
 회장 및 법제이사:부결시 학회인정의, 행정소송등 예상된다고 함. 협회로써는 대처 방법이 없음.
96. 2.12 한국치과대학장 협의회, 전국치대병원장협의회, 공직지부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96. 4.20 대의원총회 이기택회장 선출 (치의신보 97.4.27자 858호)
 인정의에 관한 질문에 대해
 최종은 법제이사:전문의와 연계 되어 있어 연구가 필요, 규제할 조항이 없음
96. 6. 5 이기택회장 기자회견:치과 타임즈(1996. 9. 9자 11면)
 전문의 문제에 대하여 “회원 80% 이상의 찬, 반이 없을 경우 치협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겠다.” 공포
96. 6.22 전국시도지부장회의(치의신보 866호, 96. 6.29)
 이기택 회장:인정의제와 전문의제는 협회장이 좌지우지할 문제가 아니다. 인정의제는 시행주체가 학회이며, 학회가 학회 회원들의 활동을 인정해 주는 차원이다.
 양명운 부산:인정의는 학회 고유 권한인가? 그렇다면 부산지부에서도 유명한 교정학 박사를 불러서 회원들에게 인정 증서를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심평택 인천:개인의원 운영에 도움을 받자는 의미가 강하다. 학회도 치협산하기관이다. 따라서 강력한

- 통제가 필요하다.
 서창환:행정소송등이 제기 된다면 대구에서는 교정수가를 시에 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정이 최악의 3D 업종이 될 수도 있다.
96. 7. 전문치의제도 연구발전 위원회 발의 공직 “결론 나온것 왜 허송세월 하나?”
96. 7.23 헌법소원심판청구-전문의 대책위원회
- 헌법소원 청구 경과 -
96. 2.10 임시대의원총회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부결(41%:59%)
- 2.12 복지부장관에 “진정서 제출”
 복지부 의정국장 면담
 출입기자단에 “성명서 발표”
- 2.17 행정소송에 대한 가능성 타진
3. 6 창립회의
 *명칭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추진 대책위원회”
 *구성
 위원장:전국치과대학학장협의회장(이상철)
 부위원장:공직치과의사회장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장
 대한치과보철학회장
 대한치과교정학회장
 대한소아치과학회장
 (인정의 시행을 결정한 전문과목 표시 학회)
 상임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김광남, 안상규(발전적 확대)
 간사:김명래, 이재봉, 허성주
 *재정
 1) 각 학회 출연금
 2) 회원 모금
 *결의:변호사에 선임계 위촉키로함
4. 8 이문재 변호사 법률적 검토 결과보고:헌법소원 결정, 헌법소원 수임료 지급 결의
5. 2 법적대응의 수임계약에 관한 결과보고
- 6.18 헌법소원 내용 설명
- 7.18 모금운동 결의- 대책위원 먼저 모금 시작

- 7.20 전국시도지부장 명의로 “우리의견해” 성명 발표
- 7.23 변호사 헌법소원청구
- 7.31 재판부 지정 (수명:이재화 재판관)
8. 치협임원 대책회의
96. 8.19 서울시 치과의사회 이사회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11명을 전원 치협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치협에 요청키로 결정 (치의신보 96. 8.24, 873호, 서치뉴스 호 외 96. 8.26))
서울시회장 백순지, 담당이사 김동원
임시대의원총회 의결내용 (시도지부장 협의회 내용과 동일, 서치뉴스 42호)
96. 8.26 서치뉴스 호외 발간
“협회와 대의원총회 권위 정면 부정”, “협회장을 법정에서” 등의 기사
96. 9. 3 대한치과의사협회 학회 인정의제도 시행 중지 촉구 및 결과 통보 요청(학술 46, 53-268)
96. 9. 4 대한치과의사협회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
96. 9. 7 의정 65507-1110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
96. 9. 7 시도지부장 협의회(서치뉴스 42호 96. 9.21) 헌소제기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 키로 결정
인정의 시행 해당 학회장 징계 촉구
협회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요구
96. 9.11 서울특별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헌소및 인정의 대책
96. 9.13 학회 인정의 제도 시행추진 중지 재촉구 통보(학술 46, 61-289)
96. 9.30 치협 전국회원 대상 설문조사(서치뉴스 44호)
설문 작성자:백성기, 김동원, 김순상, 백대일, 김석균
- 96.10.22 헌소 관련 내용증명서 발송(서치뉴스 44호 96.11.11)
발신: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 연명
- 96.11. 1 인정의건에 대한 세종합동 법률사무소 답변.
이사회의 결호력정지가처분 및 이사회 결무효확인 청구소송이 가능.
97. 3.29 서치 정기대의원총회(서치뉴스 51호 97. 4.15)
97. 4.26 헌법소원청구인, 인정의시행학회 학회장 징계안 대의원총회 상정
서치 김동원이사 발의 공치퇴장 후 토론 없이 만장일치 가결
97. 4. 의료개혁위원회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
찬성측:이금호, 이재송, 김명래
반대측:백성기, 김동원, 손창인
98. 4.25 제47차 대의원 총회에서 서치 의안인 “전문의 시행학회장 징계안등” 부결 의결 정족수인 84표에서 16표 모자라는 68표
98. 7.16 헌법재판소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의 미실시는 위헌” 결정(96헌마246)
주문
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전문의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 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 현행법령미비점
치과전문의:최초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기 전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이미 사실상 정공의 수련과정을 두고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료자나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 침해되는 기본권
직업의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의 침해
청구인들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청구인 이상철, 이의웅, 김명래), 소아치과 (청구인 이금호, 전광선), 치과보철과 (청구인 이호용, 김광남, 안상규, 이재봉, 허성주), 치과교장과(청구인 장영일)등

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사실상 마쳤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과 위 규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은 10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청구인들은 일반치과의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다.

2. 의사의 전문의 제도 초기 역사

1)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허가의 자격심사실시 기 (서류전형기)

- 51. 9.25 법률 제221호(국민의료법)에 의거 전문과목 표방 허가증 발급
- 51.12.25 보사부령에 의해 내과 등 10개과 전문과목 규정
- 52.11.12 전문과목표방허가증 10명에 발부
- 55.12.20 56. 6. 30 이후 종합병원에서 5년간 수련 받은자에 한하여 신청서 접수
56년 397명의 합격자 양산으로 국립보건원에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작업 시작
- '57. 9.19 수련병원 60개 병원 책정
- 58.12.31 보건사회부 훈령 제12호에 의거(전문과목 표방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보사부장관이 인정한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5년의 임상 실기 수련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 자격시험 근거 마련
- 59 의사 1,427명(56.96%)이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전문과목 표방허가증 취득

2) 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행

- 60. 5.24 보사부 공고 제722호(60. 5. 4)에 의해 제1회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합격률 69.8%)
 - 서울대학부속병원
 - 문제출제위원, 선택위원, 채점위원, 기술 및 실기 시험위원은 학회에서 추진
 -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시험 업무 관장
 -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산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

- 72.11.29 전문의 자격시험 업무 관장을 대한의학 협회에 위임
- 73 제15차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의협에서 주관 실시
- 74. 9.24 전문과목 표방허가증을 전문의 자격증으로 갱신 발부

3. 치과보철과의 전문 과목에 관한 역사

1) 치과보철학 전문과목의 법률적 검토

- 62. 3.20 법률 제1035호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치과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그리고 치주위병과로 공포
- 64.11.26 대통령령 제1989호 상기 5개 과목
- 65. 3.23 법률 제1690호 의료법 제6장 상기 5개과목
 - 7.31 보건사회부령 제16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61호 제3장 상기 5개과목
- 72. 2.17 대통령령 제6075호 "전문의를수련규정" 공포
제4조 수련기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제5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수련규정은 따로 정한다.
- 73. 2.16 법률 제2533호
- 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
- 76. 4.15 대통령령 제8088호로 규정
- 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시행규칙 제정
- 81.12.31 법률 제3054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5조에 명시
- 82. 7.23 대통령령 제10874호로 개정 5개 전문과목
- 82. 7.23 대통령령(제10874호)에 의해 치과의사 전문과목으로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위병과로 규정
- 83. 2.19 분과학회에 전문의 시험 시행에 관한 의견조희
- 84. 1. 보건사회부 고시 제846호 치과 인턴,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보철과 전속 전문의:1인 이상
연간 환자 진료실적:신환 300인 이상
연인원 2,000인 이상
시설기구:기공실, 대재실, 평행측정기,

진공도재소성로, 소환로, 과용서베이어, 교합기, 유압식 가압기, 온성기, 모형트리머, 진공혼합기, 기공용엔진 2대이상, 초음파 세척기, 분쇄연마기, 반조절성 교합기, 악운동기록기, 완전조절성 교합기

- 89.12.30 전문치과의제도 입법예고 : 5개 과목
- 94. 1.20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남일우교수), 대한치과보철학회(김광남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이기수교수) 등 3개학회 명의로 “전문치과의제도의 조기시행” 건의문을 행쇄위에 제출함(서치뉴스 호외 94. 2.23)
- 94. 1.29 보건사회부 3개 분과학회장에 시행 방안 검토회신(의정65530-84)
- 94. 2.18 치과전문의 제도 실시 발표(행쇄위)
- 95.1. 28 대통령령 제14516호 치과 전문과목 10개로 세분화
- 996. 1. 10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보건복지부 의정 65530-30호, 96. 1.13 관보 13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중 시행령
 - 제3조 수련기간의 변경
 - 제6조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 제3조 치과의사 수련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 98. 7.16 헌법재판소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의 미실시는 위헌 판결”(96헌마246)
 - 현행법령미비점
 - (1) 치과전문의 : 최초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기 전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이미 사실상 정공의 수련과정을 두고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료자나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 소정의 연수를 마친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 침해되는 기본권
 - 직업의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의 침해

해 청구인들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청구인 이상철, 이의웅, 김명래), 소아치과(청구인 이공호, 전광선), 치과보철과(청구인 이호용, 김광남, 안상규, 이재봉, 허성주), 치과교정과(청구인 장영일)등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사실상 마쳤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과 위 규정에 의하면 치과전문문의 전문과목은 10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청구인들은 일반치과의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다.

2) 인정의 제도 도입

- 92. 6.27. 전문의 제도에 관한 치과대학 교수 Workshop
- 92.11.27. 정기총회에서 전문의 제도 시행 촉구 결의
- 93. 7.12. 임원회의에서 인정의 제도 연구 위원회 결성 결의
- 93. 8.31. 인정의 제도 연구 위원회 결성
 - 위원장:김광남 교수
 - 위원:학회장,총무, 학술, 연구이사
- 93. 9. 8. 인정의제도 연구 위원회 1차회의
- 93. 9.16, 10.12, 10.18. 2, 3, 4차 인정의 제도 연구위원회 회의
- 93.11. 1. 인정의제도 연구위원회 5차회의 대한치과보철학회 치과보철 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안) 축조심의, 확정
- 93.12. 4. 인정의 규정 총회 승인
- 94. 1.20. 행정쇄신위원회에 3개 분과학회장 전문의 실시건의
- 94. 2.18. 행정쇄신위원회 95년 상반기중 실시키로 결정
 - 2.22. 치과 전문의제 실시 반대 운동 시작
- 94. 3.16.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임시이사회 3개 분과 학회장 불법 징계
- 94. 4. 5. 대한치과보철학회 인정의를 위한 Workshop(Intercontinental Hotel)

- 4.23. 대의원 총회- 선행조건 충족시 시행 한다는 조건부 동의안 가결
- 94. 7. 9. 대한치과보철학회 임원 Workshop:전문의 위원회등 설치 결의
- 95. 4.25. 대의원 총회 구강외과 단독 실시 부결(95. 4)이후 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등서 인정의 실시 결의
- 95.11 교정과 인정의위원 부터 시험 실시 강행
- 95.11.11. 대한치과보철학회 임원 및 대학교수 Workshop
- 95.12. 8. 대한치과보철학회 정기총회 인정의제도 시행세칙, 자격고시위원회 규정, 자격시험 시행운영규정 인준
- 96. 3.18 인정의 위원장 김광남 교수 선출
- 96. 5.14 인정의 위원 선임
- 96. 5.31 인정의 위원회 1차 회의
- 96. 6.13 인정의 위원회간사회의
 - 7. 4 인정의 위원회 간사회의
 - 세칙을 세분화 하기로 결정
 - 8.21 인정의 위원회 간사회의
 - Workshop 발표 내용 확정
- 96. 8.23 전문의 및 인정의 제도에 관한 Workshop (대덕 롯데 호텔)
- 97.10.17 대한치과보철학회 인정의 Workshop (대덕 롯데 호텔)
- 97.11.28 대한치과보철학회 인정의 150인, 지도의 72인 선정, 수련기관지정 32개기관
- 98.2.4.11. 대한치과보철학회 인정의를 위한 필수 보수교육(수련과정 및 대학원 이수자) 참석인원 675명

V. 총괄 및 고안

1.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역사

1) 제1회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날까지(62.10.23)

법률 제1035호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치과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그리고 치주위병과로 공포(62. 3.20)된 후, 15명으로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첫모임 개최(62. 8. 8)하여 전문의 시험을 실시하기로 한 후 제1회 치과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날, 응시자 전원 불참으로 시험 무기연기(62.10.23)된 것이 오늘의 치과 전문의 제도가 표류하게된 원인의 효시였다.

2) 제1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69.11. 8)

치과의사의 전문에 제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1989호(64.11.26), 법률 제1690호 의료법 제6장(65. 3.23), 보건사회부령 제16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61호 제3장(65. 7.31)에 명기되어 왔으며, 학회장회의의 의결로서 보건원장에게 전문의 시험 실시를 요청하게 되었다(65. 7.13).

2년후 보사부령 제119호로 의사,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규정을 공포(67. 7.21)하고 전문의 자격심의위원회를 보건연구원에서 개최 하였으며(68. 4.23) 수련병원 신청을 받고(69. 1.31) 이를 치과월보 1면에 게재(69. 4.15)하고 보건연구원에서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69.4 .20) 12개 수련병원 인정과 회의 내용을 치과월보 69. 6.25일자에 게재 하였다. 보건원과 행정부에서 위원장직을 맡기로 헌법을 개정 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선출 하기로 하여 김동순 부위원장으로 선출 하기에 이르렀다.

제4차 전문의 위원회(69. 6.25)를 개최하여 12개 수련병원을 인준(치과월보 28호)하였고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하였다.

가. 전문과목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한다.

나. 지도치과의사의 자격

- 대학에 있어서는 조교수 이상

- 군에서는 소령 이상

-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에서는 해당 과목을 7년이상 수련한 자

*치과전문의 수련병원을 인준 받고자하는 병원은 치과의사협회에서 매년 1회 수련병원 인정 신청 요령 공고에 의하여 신청토록 한다.

제1회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에 관한사항

1. 응시자격및 심사 절차

1) 국립보건연구원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추천에 의거 응시자격 심사위원을(각 학회 3명) 위촉한다.

2) 응시자격의 심사

각학회장은 응시자격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응시자가 제출한 임상수련증명서에 의거 응시자격유무를 심사 확인 보고한다.

3) 응시자격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자. (보건사회부령 제199조 제3조)

2.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수련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국가시험 합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은 면허증 신청기간으로 수련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4) 응시과목

5) 합격기준

6) 출제방법

보건연구원에서 5차 전문의자격심의회를 개최하고(69.10.10) 시험실시 일자와 방법을 의결(치과월보 10.30)하고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3호에 의거하여 공고하기에 이르렀다(69.10.23).

그러나 응시자격에 있어서 동등자격 규정이 빠져 문호가 좁다는 것과 수련병원 인정이 대학과 군병원에 편중 되어서 이 역시 응시자격의 문호가 좁아졌다는 건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여 보건연구원장에 시험을 당분간 연기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이 건의가 받아들여 졌다(69.11. 8).

3) 과도 휴지기 (80. 3. 까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허용위원장(국립보건원장)을 비롯하여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심의회를 개최(69.12.26)하여 수련병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유니체어 3대이상 과목당 2대 증설의 시설기준 요건을 확정하고 자격있는 치과의사 있어야 한다고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마련 하였다.(치과월보 70. 1.15)

그후 수련병원 실태조사 착수하여 수련의 등록제 실시(치과월보 71. 4.10) 하고 대통령령 6075호 "전문의를수련규정" 공포(72. 2.17)하였다.

제4조 수련기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제5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수련규정은 따로 정한다.

한편 공직치과의사회 창설 및 대의원 선출규정 등을 내용으로한 정관 규정안을 보건사회부에서 승인 받았다(치협 21차 총회). 치과월보 62호(72.2. 17)

제22차 대의원정기총회에서 ① 국민소득 1000불 때까지 ② 의료보험 제도가 될 때 ③ 대다수 회원이 요망할 때 까지 무기연기하기로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법률 개정 할 때 마다 치과의사 전문의에 관한 법률은 자동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었다.

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되고, 76. 4.15 대통령령 제8088호에 규정되었으며, 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시행규칙제정 되었다.

4) 1차 입법예고(89.12.30)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전문의제도 존폐여부 회신요청"을 받고 대의원 총회에서 보고 대회를(80. 3.29) 가진 후 보사부에서 치과전문의제 조속 실시를 요청(82. 2.26)하였고 대통령령에 의해 치과의사 전문과목으로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위병과로 규정(82. 7.23) 하였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846호(84. 1.)로 치과인턴,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하기에 이르렀다.

보철과 전속 전문의:1인 이상

연간 환자 진료실적:신환 300인 이상 연인원 2,000인 이상

시설기구:기공실, 대재실, 평행측정기, 진공도재 소성로, 소환로, 치과용 서베이어, 교합기, 유압식 가압기, 온성기, 모형트리머, 진공혼합기, 기공용엔진 2대이상, 초음파세척기, 분쇄연마기, 반조절성 교합기, 악운동기록기, 완전조절성 교합기

국방부에 치과의사, 군전공의 수련기간 연장, 건의하여 우선 구강악안면외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별 세부조정계획을 수립한 후 검토를 받아 시행키로 회신 받았다(87. 2.18).

보사부(의제 01254-025818호)로 부터 전공의 수련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실시 근거만 있는 치

과전공의 수련제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청 공문 접수(87.11.11)한 후,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에 관한 규정(안)을 건의(88. 3. 2)을 하게 되었고 국방부에 보사부에 건의한 10개과목 수련기간 연장건의(88. 3.25)를 하였으며 국방부로부터 수련기간 연장 및 징집연기에 관한 사항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장을 통하여 요청하고, 10개과에 대한 레지던트 수련기간 3년은 보사부와 수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 하겠음을 통보 받았다(88.12. 2). 전문지인 현대치학 제55호 및 제56호 6면에 별도의 전문치과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게재하여 회원의 여론 수렴(88.12.29)하였으며 협회기관지인 치의신보 제522호 제8면에 시행규칙 제정(안)을 최종 공고(89. 1.21)한 후, 보사부에 “전문치과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정(안)”을 건의(89. 1.21)하기에 이르렀다.

보사부로부터 동 건의 사항에 대하여 학계(치과대학등 포함) 및 개업의사들도 참여한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집약된 내용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 받았으며(89. 2. 1) 보건사회부에 상기 사항에 대하여 그간 협회에서 추진한 결과를 첨부하여 재건의(89. 2.28)를 하였고 보사부로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치과의 수련병원 명부, 수련병원별 년도별, 전문과목별 이수자 현황, 89년도 수련병원별 인턴, 레지던트 년차별 현황자료를 요청 받아(89. 3.16) 보사부에 동 건의 회신에 따른 자료를 제출(89. 5.13) 하였다. 보사부에 5개 과목에 대하여 전문치과의 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건의(89. 9.20) 하였는바 보사부로부터 상기 사항에 대하여 법률 운용의 체계상 합당한지 여부를 법제처 등과 사전 협의 되어야 할 사항이며, 본 제도 시행을 위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임을 회신 접수 하였다(89.10.20). 보사부 요청에 의거 의료정책과장과의 간담회 개최(89.11.24) 한 후 전문치과의 제도가 입법예고 되었다(89.12.30)

(4) 행정쇄신위원회 청원서 제출까지(94. 1.20)

긴급전국지부장회의에서 입법예고(안)을 정기 대의원총회까지 유보할 것을 보사부에 요청키로 의결(90. 2.10)한 후 보사부로부터 입법예고 기간이

후 5개월 이 경과한 점을 감안할 때 계속 지체 할 당위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문 치과의제도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위원회의 분석결과 90. 7. 7까지 제출하기 바라며, 기일내 제출치 않을시는 당부 방침대로 처리하겠다는 공문 접수 하였다(90. 6.29). 보사부로부터 기 입법예고된 전문치과이 제도 정립을 금년내 종결코자 협회의 집약된 최종이건 제출 촉구 공문 접수(90.11.14)하고 보사부에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5차에 걸쳐 연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토의를 하고 있으므로 집약된 최종 의견을 제출 할 때까지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다(90.11.30). 보사부는 정기감사시 전문의제도 입법예고 연구결과 보고 지연 지적당 하였으며(91.12.17-19) 보사부에 상기사항에 대하여 현재 연구중이며, 금번 제41차 총회에 상정 결의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의 답변서 제출(92. 1.31) 하였다.

보사부에 총회 부의사항인 전문의제도 연구결과 보고 지연독촉 공문에 대하여

제41차 총회에서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1,2차 투표를 실시한 바, 상태와 변동없이 시행을 보류키로 의결되었음을 회신(92. 6.24) 하였으며 보사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중 치과진료과목 추가개정건의(92.5.13-7.20), 의료법 시행규칙 중 치과진료과목 추가(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와 기존 진료과목 명칭변경에 대한 입법예고한 후, (보사부령 제901호 93. 3. 3) 개정하게 되었다(92. 8.28).

치협은 각 전공과별, 각 수련기관별로 전공의 수련기간이 달라 국방부에서 이 수련기간의 통일을 요구해 오에 따라 각 수련병원등에 10개과목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을 3년으로 통일해 줄것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94년도 국전공의 선발시 부터 구강외과, 교정과는 3년 과정을, 기타 8개과는 2년 과정으로 통일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치협에 밝혀 왔다(93.12.11).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남일우교수), 대한치과보철학회(김광남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이기수교수) 등 3개 학회장 명의로 “전문치과의제도의 조기시행” 건의문을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출하여(94. 1.20) 행쇄위는 치과전문의제도 실시 발표(행하기에 이른다(94. 2.18)).

(5)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까지(96. 7.30 까지)

행정쇄신위원회 (행쇄위 05090-250)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치과전문의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촉구(95. 7.19) 하여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법 예고(보건복지부 의정 65530-30호) 하기에 이른다(96. 1.10).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중

시행령

제3조 수련기간의 변경

제6조 수련병원및 수련기관의 지정기준

시행규칙

제3조 치과의사 수련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치과전공의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
입법예고 철회 결의문 채택, 협회장 불신임 건
김정균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에 즈음하여”란 유
인물을 배포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점진적 전
문의 제도 시행안을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하였
다.

- 입법 예고는 대의원총회에서 제시한 선행조건
의 가시적 결과임

- 1차 기관 표방 금지는 보건복지부와 합의하였
음

- 의보수가 현실화 17% 인상

- 행정쇄신위원회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니 부
끄러움

임시대의원 총회 부결 105대 148(대한치과의사
협회 안)로 부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를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치대병원장협의회, 공
직지부 보건복지부 항의방문(96. 2.12)하고 가칭 “치
과의사전문의 제도추진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11
인 명의로 헌법소원청구서를(96. 7.23) 대리인인 채
근직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에 이
른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전문의의 수
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 을 개
정하지 아니하는 입법 부작위 및 전문치 시험을 실
시 하지 아니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문치의 시
험을 실시하도록 하지도 아니하는 각 공권력

을 불 행사에 대하여,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위
임받은 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권력의 불행
사는 위헌임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청구인들과, 그
들이 진료하는 환자들, 교육받고 있는 치과의사들
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자유, 학문의
자유, 보건권, 재산권 등이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6) 헌법소원 위헌 판결 까지(98. 7.16)

헌법재판소는 재판부 지정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이재화 재판관을 임명하여 검토를 한 후 헌법소원
청구서를 피청구인에 전달하고 답변서를 요청하였
다(96. 7.31).

대한치과의사협회 세종합동 법률사무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 제출(96. 9. 4)한 바, 다음과
같이 진술 하였다.

역사.

가. 많은 검토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나.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당분간 유보
유보의 타당성

가. 장기별 진료가 아니라 행위별 진료이므로
전문분야에만 진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 하지도 않다. 또한 현재에도 수준
높은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 보철, 교정 등 인기과목에 대한 수련의의
편중으로 인하여 수련 과정이 더욱 기형화
될 염려가 있다.

다. 보철과 교정을 특정 전문치의들에게 독점
시킬 경우 일반 치과의사들의 생존권이 위
협되고 다른 전문과목을 소멸하고 말 것이
다.

라. 일반개원의의 전문치의 자격취득의 어려
움, 의료사고 발생시 전문치의와 비전문 치
의간의 신분 보장의불균형, 의료전달체계
의 불확립으로 인한 비 전문치의들의 피해
의식, 국민들의 전문의료기관 선호 경향으
로 인한 전문치의에 대한 환자집중 현상과
일반 치과의의 의욕상실등

- 수련과정을 정비하고 의료보험 수가를 개선 하
는등 제반 사항을 정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있어 전문 치의제도의 실시를 유보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민 보건 향상 이라는 공공복리에 부합하는것 -

심판청구의 적법성

가. 부진정 입법부작위 이므로 적극적 헌법소원을 제기 하여야 한다.

나. 전공의의 수련기간이나 수련병원의 지정 기준등은 보건 복지부장관의 입법재량 사항임.

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전문치의 자격시험 실시가 여러가지 이유로 시기상조 이므로 보완 입법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해와 잠시 보완 입법을 유보하고 있을뿐. 따라서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 하지 않았음.
-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치의 자격시험 실시 부작위는 위법할지언정 이를 두고 위헌이라 할 수 없다.

마. 일반의사들의 전문분야 분류가 장기별 분류인것과 달리 치과에 있어서 전문분야 분류는 행위별 분류. 전문치의제도가 조기에 가져올 부작용과 비교형량해 볼때 그정도의 제약은 헌법 제 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바. 이익은 반사적이익

사. 전문치의란 진료행위의 구분에 불과하여 이를 각가 독립된 직업이라 할 수 없고 전문과목에만 종사하는 전문치의로서 활동하는 데에는 법령상 아무 제약이 없다.

아. 법대생들이 사법시험 공부 몰려 법학의 발전이 지장을 받으니 법학분야의 학문의 자유를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 하자는 주장과 같은것 .

- 대개의 경우 반강제적으로 전공의 수련과정에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기존의 전문치의나 교수들로서는 연구 보조자들을 거느릴 수 있게 되어 연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인 바, 청구인들의 학문 발전 주장은 실제로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러한 결과 전문치과 분야에서 연구할 의향이 없는 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전공의 수련을 강요하여 치대 졸업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적 낭비를 결과 할 수도

있다. -

자. 청구인들은 거의 다가 대학병원에 근무하거나 개원의로 그 누구도 지방 공사나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지 않음. 또한 전문치의 제도가 실시 되더라도 보수면에서 전문의로 처우 된다는 필연성은 없는 것임. - 헌법 제 37조 2항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음 -

보건복지부는 의정 65507-1110호로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96. 9. 7).

가. 청구인들 관련 집단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배제한 주장이며, 공권력 불행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단체행동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여 보건 복지부에서는 부득이 동법 시행 규칙중 치과전문의 부문에 대하여는 개정을 보류 하게 되었음.

· 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입법예고 철회 요구들 반대 서명 (2,298명)

·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 내용 사본 1부.

다. 치과전문의 제도 시행 및 수혜 당사자인 치과의료계의 의견 불일치로 부득이 동 법개정이 보류 되었음.

라. 청구인들의 학문 연구활동을 방해하였거나 학문을 계속 할 수 없도록 특별히 조치 하지 않은 이상 학문 자유를 침해 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임.

치협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전국회원 대상 설문조사를 하였다.

(96. 9.30) 설문 작성자로는 백성기, 김동원, 김순상, 백대일, 김석균 이었는데 설문자체가 객관성을 결여한 설문이라 응답자가 41% 에 불과 하였다. 한편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청구인들에 다음과 같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 하였다.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한 11명을 전원 치협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치협에 요청기로 결정 (치의신보 96. 8.24, 873호, 서치뉴스 호의 96. 8.26)) 하고, 임시대의원총회 의결내용 (시도지부장 협의회 내용과 동일, 서치뉴스 42호)

을 전제하고 호의를 받긴 하여 “협회와 대의원총회 권위 정면 부정”, “협회장을 법정예” 등의 선동 기사를 게재하고 서치뉴스 42호(96. 9.21)에는 현소제기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하기로 결정, 인정의 시행 해당 학회장 징계 촉구, 협회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요구라는 제하에 기사를 실었다.

또한 현소 관련 내용증명서 발송 (서치뉴스 44호 96.11.11)하고 이후 한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토론의 장은 의료 개혁위원회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후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찬성측: 이금호, 김명래, 이재봉 반대측: 백성기, 김동원, 손창인 이 참가 하였다.

치협회원들의 관심이 잇혀진 가운데 47회 대의원 총회(98. 4.25)에서 서울특별시 백성기 법제이사 인정의 시행은 치과의사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인정의 시행 학회장을 징계하고, 그동안 발부 하였던 인정의 증서를 회수하며, 만약 안될시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자는 안을 발의 하였으며 이재봉 대한치과보철학회 연구이사는 반대토론을 통해 인정의 시행은 학회의 고유활동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수련교육의 정상화에 있는만큼 연간 약 1,000만불에 달하는 치과의사 해외 유학비, 약 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치과의사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결 결과 서울시 동의안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68명에 불과하여 의결정족수에 16표가 모자라 부결되었고, 이어 손창인 서울시 부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의 징계안을 자진 철회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재판장 김용준, 주심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김문희,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신창인, 이영모, 한 대현)”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의 미시시는 위헌”이라고 전원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98. 7.16, 96헌마246) 판결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청구인 대한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각하 한다.

전원일치로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침해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령미비점

- (1) 치과전문의: 최초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기 전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이미 사실상 정공의 수련과정을 두고 있는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지정하고 그 수료자나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로서 소정의 연수를 마친자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등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 (2) 수련병원: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첨부서류인 수련병원실태조서의 입법적 미비점 보완
- (3) 치과전문과목: 규정에는 10개 과목, 규칙에는 5개과가 설치 따라서 규칙의 개정이 필요
- (4) 전공의수련 시행기준: 최초의 전문의가 배출된 뒤에는 전공의의 수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침해되는 기본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의 침해 청구인들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청구인 이상철, 이의웅, 김명래), 소아치과 (청구인 이금호, 전광선), 치과보철과 (청구인 이호용, 김광남, 안상규, 이재봉, 허성주), 치과교장과(청구인 장영일) 등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사실상 마쳤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과 위 규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은 10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청구인들은 일반치과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전공의 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형벌의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행복

추구권을 침해 받고, 이점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 시험이 실시 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과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치과 전문의자격시험제도가 실시 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 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입법 부작위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

나. 의사의 전문의 제도 역사

(가)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허가의 자격심사 실시 시(서류전형기) 의사들의 경우 일본식의 외국 제도를 유지 하느냐, 미국식으로 전문의 제도를 택 하느냐 하는 논란이 해방이후 줄곧 있다가, 미국 식 제도를 택하기로 하여 51.9.25 법률 제221호(국민의료법)에 의거 전문과목 표방 허가증 발급 하고 51.12.25 보사부령에 의해 내과 등 10개과를 전문과목으로 규정 하고 52.11.12 전문과목표방허가증 10명에 발부한 것이 효시이다.

전문과목표방 허가를 신청한 의사가 많아짐에 따라 55.12.20, 56.6.30 이후 종합병원에서 5년간 수련 받은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 하기로 하였으며 56년 397명의 합격자 양산으로 국립보건원에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57. 9.19 수련병원으로 60개 병원을 책정 하였다.

58.12.31 보건사회부 훈령 제12호에 의거(전문 과목 표방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보사부 장관이 인정한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5년의 임상 실지 수련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여 자격시험 근거를 마련 하였다. 59 까지 의사 1,427명(56.96%) 이 보사부장관으로 부터 전문과목 표방허가증 취득 하였다.

(나) 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

60. 5.24 보사부 공고 제722호(60. 5. 4.)에 의해 제 1회 전문의 자격시험을 서울대학 부속병원에서 실시 하였으며(합격률 69.8%) 문제출제위원, 선택위원, 채점위원, 구술 및 실기 시험위원은 학회에서 추천 하였으며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시험업무 관장 하였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의 합산성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하였다. 72.11.29 전문의 자격시험 업무 관장을 대한의학협회에 위임 하고 73년도 제15

차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의협에서 주관 실시 74. 9.24 전문과목 표방허가증을 전문의 자격증으로 갱신 발부 한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치과보철과의 전문 과목에 관한 역사

(1) 치과보철학 전문과목의 법률적 검토

59년도에 설립된 대한치과보철학회는 62. 3.20 법률 제1035호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치과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그리고 치주위병과로 공포 될 때부터 전문과목으로 법률적으로 명시 되도록 노력하여 64.11.26 대통령령 제1989호 상기, 65. 3.23 법률 1690호 의료법 제6장, 7.31 보건사회부령 제161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 161 호, 72. 2.17 대통령령 6075호, 73. 2.16 법률제2533 호, 75.12.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 76. 4.15 대통령령 제8088호 79. 3. 2 보건사회부령 제622호로 시행 규칙을 제정할 때 까지 다른 4개 과목과 함께 줄 곳 법령에 명시 되어 있었다.

지금의 법률로 제정 된 것은 81.12.31 법률 제3054 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5조에 명시 된 것으로 82. 7.23 대통령령(제10874호)에 의해 치과의사 전문과목으로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치주 위병과로 규정 83. 2.19 분과학회에 전문의 시험 시행에 관한 의견조치를 하였고 84.1. 보건사회부 고 시 제846호로 치과인턴, 레지던트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별첨과 같이 개정 고시 하게 되었다.

보철과 전속 전문의:1인 이상

연간 환자 진료실적:신환 300인 이상 연인원 2,000인 이상

시설기구:기공실, 대재실, 평행측정기, 진공도재 소성로, 소환로, 치과용서베이어, 교합기, 유압식 가압기, 온성기, 모형트리머, 진공혼합기, 기공용엔진 2대이상, 초음파세척기, 분쇄연마기, 반조절성 교합기, 악운동기록기, 완전조절성 교합기

89.12.30 전문치과의제도 입법예고에 5개과목이 포함 되어 있었고, 94. 1.20 대한구강악안면외과 학회(남일우교수), 대한치과보철학회(김광남교수), 대한치과교정학회(이기수교수) 등 3개학회 명의로 “전문치과의제도의조기시행” 건의문을 행쇄위에 제출함(서치뉴스 호외 94. 2.23), 94. 1.29 보건사회부 3개분과학회장에 시행방안 검토회신

(의정 65530-84), 94. 2.18 치과전문의 제도 실시 발표(행쇄위), 95. 1.28 대통령령 제14516호 치과 전문과목 10개로 세분화 하였으며, 95. 7.19 행정쇄신 위원회 (행쇄위 05090-250) 보건복지부 장관에 치과전문의 제도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촉구하여 96. 1.10 보건복지부 입법예고(보건복지부 의정 65530-30호, 96. 1.13 관보 13면)를 하였으나, 대한치과 의사 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이 되자, 입법예고를 철회 하여 96. 2.12 한국치과대학장 협의회, 전국치대병원장협의회, 공직지부장이 보건복지부 항의방문 하였으나 별소득이 없자 96. 7.23 헌법 재판소에 위헌 판결 소송을 제출하여 98. 7.16 헌법 재판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의 미실시는 위헌”(96헌마246)이라는 판결을 헌법재판소판결에서 드물게 이루어지는 만장일치로 얻어 내게 되었다.

지난 37년간 보건 복지부 장관은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의 직업의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 하였다고 판결 하였다. “청구인들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강악안면외과(청구인 이상철, 이의웅, 김명래), 소아치과(청구인 이강호, 전광선), 치과보철과 (청구인 이호용, 김광남, 안상규, 이재봉, 허성주), 치과교정과(청구인 장영일)등의 전공의 수련 과정을 사실상 마쳤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과 위 규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은 10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청구인들은 일반치과의로써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를 침해 당하고 있는 것이다.”

(2) 인정의 제도 도입

89년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관한 입법예고가 대의원 총회에서 유보로 결정되어 시행되지 않자, 대한치과보철학회는 1992. 6.27. 전문의 제도에 관한 치과대학 교수 Workshop을 개최하고 1992.11.27. 정기총회에서 전문의제도 시행추구를 결의하였으며(93. 8.31) 인정의제도 연구위원회를 결성 하고 위원장에 김광남교수, 위원에 이선형 보철학회장, 최대균 총무이사, 조인호 학술이사, 이재봉 연구이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한치과보철학회 치과보철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

정(안) 축조심의, 확정(1993.12. 4.) 인정의 규정을 총회에 승인받게 되었다.

1995.12. 8 대한치과보철학회 정기총회 인정의제도 시행세칙, 자격고시위원회 규정, 자격시험시행 운영규정을 인준하였고 1996. 3.18 인정의 위원장에 김광남 교수를 선출하고 1996. 5.14 인정의 위원 20인을 선임 한 후, 1996. 5.31 인정의 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인정의 위원회를 개최 하여 97.11.28 대한치과보철학회 인정의 150인, 지도의 72인 선정, 수련기관지정 32개기관을 지정 하였으며 98. 2. 4, 11. 양일간 대한치과보철학회 인정의를 위한 필수 보수교육 (수련과정 및 대학원 이수자)을 실시한 바, 참석인원이 675명이 되었다.

V. 결 론

저자는,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및 관련법령, 헌법 소원청구서, 답변서, 판결문, 치과월보, 치의신보등의 치과 기관지와, 전문의에 관련된 공문, 전문의에 관한 저서등을 비교하여 치과보철과의 전문과목에 대한 연구를 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보철과는 지난 37년간 전문과목으로 법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2. 전문 과목으로 치과보철과 수련 과정 이수자는 800여명이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법소원 청구인 5인을 포함한 치과보철과 수련과정 이수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박탈 하였다.
4. 의료법 개정이나, 전문과목 변경은 법적인 문제점을 야기 한다.
5. 수련과정 미이수자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어야 법적 문제점이 해소 된다.

참 고 문 헌

1. 대한민국 헌법
2. 의료법
3. 의료법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규정 및

- 동 시행규칙
5. 법률
 51. 9.25 제221호, 62.3.20 제1035호, 65. 3.23 1690호, 73. 2.16 제2533호, 75.12.31 제2862호 81.12.31 법률 제3054호
 6. 대통령령
 - 64.11.26 제1989호, 72. 2.17 6075호, 76. 4.15 제8088호, 82. 7.23 제10874호, 95. 1.28 제14516호
 7. 보건사회부령
 64. 7.31 제161호, 67. 7.21 보사부령 제119호, 73. 4.10 보사부령 제405호 79. 3. 2 제622호로 시행규칙제정, 92. 8.13 제901호
 8. 보건사회부 공고
 62. 4. 제925호
 9. 보건사회부 고시
 84. 1. 제846호 89.12.30 전문치과의제도 입법예고
 10. 국립보건연구원 공고 제23호
 11. 보건사회부 공문
 - 87.11.11 의제 01254-025818호, 94. 1.29 의정 65530-84, 96. 1.10 의정 65530-30호, 96. 1.13 관보 13면
 12. 행쇄위 공문
 95. 7.19 행쇄위 05090-250
 13. 치협공문
 94. 3. 법제 43, 90-595 96. 1. “임시대의원총회에 즈음하여”96. 9. 6 학술 46, 53-261, 96. 9.13 학술 46, 61-289
 14.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연구결과에 대한 공청회 자료(93. 4. 6,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문의제도연구위원회)
 15. 전문치의제 실시에 대하여(93.11. 6, 건강사회를 위한치과의사회, 구강보건정책분과)
 16.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관한 경과 보고서, 1993, 치협전문치과의 제도연구위원회
 17. 전문치과의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보고, 1993, 치협전문치과의 제도 심의위원회 연구보고서
 18. 헌법재판소 결정문
 98. 7.16(96헌마246)
 19. 헌법소원 청구서:헌법소원청구인 11인, 96. 7.23, 대리인채근직면
 20. 헌법소원 답변서:보건복지부(96. 9. 7의정 65507-1110)대리인 세종합동법률 사무소
 21. 헌법소원 답변서:대한치과의사협회 96. 9. 4
 22. 병원협회 20년사
 23. 치과 타임즈(96. 9. 9)